

世界主要防火協會의活動狀況

企劃調查部

I. 緒言

韓國火災保險協會定款第1條에 보면協會의英語名稱이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略字는 KFPA"라고明示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fire protection이란 "火災의豫防,發見 및 鎮壓에 관한 모든 것, 火災로 인한人命과 財產上의 피해의 減少에 관한 모든 것"을意味하는單語로서 우리에게는 꽤生疏한語彙라고하겠다. 다시 말해서 fire protection에는防火는 물론火災의鎮壓, 이에 관한調查·研究·啓蒙 등廣範圍한 防災意味가 含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法律 第2482號(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法律)第11條 및 第15條 등에는 韓國火災保險協會의 任務가 (1) 火災의豫防을 위한 安全點檢, (2) 消火設備에 따른 保險料率割引等級의 查定, (3)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관한調查·研究·啓蒙, (4) 當局에의 建議, (5) 其他 等으로 規定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火災豫防 및 研究·啓蒙에 관련되는 諸般事業을遂行하는 機關의 英語名稱을 KFPA라고 번역한 것은 지극히妥當한 일이라고하겠다.

韓國火災保險協會와 같은 民間防火團體(또는 national fire protection organization)가組織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해도 30個國以上인데, 그 중에는 美國의 National Fire Pro-

tection Association(1896年創設), 英國의 Fire Protection Association(1946年創設)等과 같이 그야말로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機關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 방화 단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대부분이 보험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 화재 예방 계통, 상담, 연구 및 각종 規則 또는 基準('스탠더드')의 작성 등에 주력하고 있는點이라고 하겠다.

世界主要防火協會의活動狀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世界의 主要防火協會

(1) 「덴마크」……1920年에 設立된 Dansk Brandaerens-Komite(「덴마크」防火協會)는 「코펜하겐」에 자리하고 있다.勿論 非營利機關이다. 協會를 運營하는데 必要한 資金은 政府 및 市等의 地方政府, 保險會社를 비롯한 各種會社와個人들로부터 出捐되고 있다. 한 가지 特異한 點은 이 協會가 產業機關의 安全點檢을 實施해 주고 있으며 點檢時에 報酬를 받는다는 것이다. 協會의 活動狀況을 살펴 보면 우선 各種「스탠더드」의 制定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스탠더드」의 制定이란 火災豫防과 安全을 위해서最少限 갖추어야 할 標準이 무엇인가를 決定하는 것을 말한다. 例를 들어, 消火器는 적어도 이런程度의 性能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工場의 施設과 환경은 이러이러하여야 安全하다는 式으로

그基準을 制定하는 것이다. 이러한「스탠더드」는 새로운 工場을 建設한다든가 製品을 生產하는 데 있어 主要 參考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스탠더드」의 制定 외에도 이 協會는 印刷物等을 통한 教育活動, 即 防火啓蒙事業을 활발하게 展開하고 있으며, 防火 및 建築問題에 관한 相談活動도 하고 있다.

(2) 「벨기에」……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contre l'Incedie(「벨기에」防火協會)는 1957년에 設立되었으며 「브뤼셀」에 所在하고 있다. 역시 保險會社들이 出捐, 運營하는데 그 主要業務는 防火에 관한 弘報事業, 相談, 各種「스탠더드」의 制定 등 「벤마크」防火協會와 흡사하다. 특히 「벨기에」는 工業國인만큼 各種 工場이 갖춰야 할 「基本要件」(「스탠더드」)의 制定은 이 協會의 業務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스위스」……Brand-Verhütungsdienst fur Industrie und Gewerbe(工場 및 商社를 위한 防火「서비스」機關)는 「퓌리히」에 위치하고 있다. 이 機關은 1944년에 「스위스」火災保險協會를 비롯한 3個 團體가 聯合하여 組織하였는데 1958년에 이르러 다른 一個 團體가 이에 加盟하였다.

역시 保險會社가 出捐, 運營하며 이 밖에 會員會社들도 經費를 부담한다. 이 機關은 1,700餘 工場 및 商社에 대해 火災豫防 및 消火에 관련되는 모든 便宜를 提供한다. 即 建物의 設計, 消防器具 等에 관한 「서비스」, 教育(弘報)用 傳單, 「포스터」, 冊子等의 發行·配布, 建物의 設計와 기존 건물의 防火問題에 대한 相談等이 그것이다.

(4) 「오스트리아」……1930年代에 保險會社들이 設立하였으며 1948년에 再組織된 Zentralstelle für Brandverhütung(中央 消防部)은 「빈」에 所在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大部分의 州에는 消防部들이 設立되어 있는데, 이 消防部를 運營하기 위한 經費는 政府와 保險會社들이 分擔한다. 消防部는 消防官署, 地方官廳等에 消防

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고 工場을 點檢하며 其他 產業施設에 대한 技術的인 助言等을 하기도 하는데, 이 中央消防部는 모든 消防部의 事業을 調停, 統括하는 役割을 擔當한다. 防火問題에 있어 政府와 民間의 協力이 獨特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셈플」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英國……1946年에 創設된 Fire Protection Association(防火協會)은 保險會社들이 出捐, 運營하고 있으며, 贊助會員으로서 工場, 商社, 消防隊, 外國 防火機關 등이 加入하고 있어 會員數는 約 6,000에 이른다.

贊助會員의 年間會費는 12 「파운드」이며 이들은 FPA의 모든 發刊物을 1部씩 받게 된다.

FPA는 「런던」에 있으며 Journal 및 Fire Bulletin等 두 가지 種類의 季刊誌를 비롯, “火災豫防 및 調停”, “工場火災安全計劃” 等 수백 종의 서적과 弘報 映畫 「필름」, 「슬라이드」, 「포스터」 등을 만들어낸다. 또한 消防問題에 관한 一종의 情報交換所의 役割을 하고 있다.

FPA 외에도 英國에는 Joint Fire Research Organization, The Institution of Fire Engineers, The Industri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等 많은 民間 消防團體들이 있다.

(6) 「프랑스」……「파리」에 있는 Centre National de Prévention et de Protection(全國 防火·消防「센터」)은 保險會社들에 의해 1956년에 設立되었다. 非營利機關으로 季刊 「저널」 및 격월간 기술 잡지를 발간하며 研究所도 運營하고 있다.

(7) 「핀란드」……1922년에 創設된 Suomen Palontorjuntalitto(防火協會)는 「헬싱키」에 자리잡고 있는데 市, 保險會社, 工場, 個人 등으로부터 資金을 받는다. 防火「센터」를 운영하면서 相談活動을 展開하며, 기술 업무, 조사 업무, 弘報業務를 遂行한다.

(8) 「필리핀」……Philippine Fire Protection Association(「필리핀」防火協會)은 1964年 5月에 「필리핀」保險業者 調查協會로 發足이 되었으나 1967年 7月에 이르러 그 名稱을 現在의 그것으

로改稱하였다. 最初의 名稱이暗示하듯 元來 이 協會는 放火에 대한 調查活動을 하기 위해서 保險會社들이 組織한 것이다. 한 가지 特異한事實은 이 協會의 定款에 그 存續期間이 50年이라고 規定되어 있다는 點이다.

現在 이 協會가 벌이고 있는 活動中重要한 것을 들면 會員會社(保險會社)들의 要請에 의해서 이 會社들의 고객에 대한 損害防止検査(loss prevention survey)의 實施, 火災原因調査, 放火調查, 既存建物의 防火에 관한 相談, 新築하려는 建物의 事前 建築相談「서비스」, 各種 火災統計의 수집·整理, 防火關係 「세미나」를 비롯한 各種 教育의 實施 등을 꼽을 수 있겠다.

資金은 保險會社에서 나오며 會員制를 實施하여 準會員 即 保險會社外의 會員들로부터도 會員費를 거두어 들인다.

(9) 蘇聯……全蘇聯義勇消防協會는 會員이 約 400萬名이라고 한다. 이 協會의 目的是 農場, 工場 등 專門的인 消防官署가 없는 곳에서 消防隊를 組織하여 火災豫防 및 鎮火活動을 實施하는 한편 防火教育을 實施하는 데에 있다.

이 協會 말고도 1937年에 「모스크바」에 設立된 “中央 防火 科學 研究所”에서는 蘇聯內에 20個所의 實驗所를 運營하고 있으며 各種 實驗의 實施, 防火에 관한 相談, 「스탠더드」의 作成等 諸般 事業을 하고 있다.

(10) 美國……「보스턴」에 자리잡고 있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全國防火協會·NFPA)은 1896年 美國의 保險會社들이 主軸이 되어 設立하였다.

當時 保險會社들은 (ㄱ) 火災豫防法과 火災時의 安全策을 研究·啓蒙한다. (ㄴ) 이러한 活動을 통해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減少시킨다. (ㄷ)는 結局 保險會社들에게 利益을 주는 것이다.) (ㄷ) 이러한 活動을 통하여 矢接적으로 또는 結果의으로 國家에 奉仕한다… 등등의 目的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逐行할 民間機構를 自發의으로 設立하였던 것이다.

當時 NFPA의 定款에는, “科學을 振興시키고

火災豫防 및 鎮火方法을 改善하여 이에 關한 情報(資料)를 審集·傳播하고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適切하게 防止하는 데 있어 NFPA 會員과 大衆과의 協調關係를 保證“하려는 것이 그 目的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換言하여 NFPA는 “火災로 인한 人命損失과 財產被害의 減少에 全的으로 奉仕하는 非營利 技術 및 教育(啓蒙宣傳) 機關”인 것이다. 設立當時에 標榜했던 이러한 目的是 오늘날에도 變함이 없이 그대로 繼承되어 오고 있다.

1914年當時 NFPA의 會長이었던 「로버트 디 콘」氏는 “人間은 不良建物, 人命과 財產에 危險을 주는 建物들을 繼續建設하고 있는 바, 이렇게 不良建物들을 자꾸만 建築하는 原因은 主로 無知 때문이다.”라고 概嘆한 후, 이러한 無知를 깨우쳐 주기 위한 積極의 研究와 弘報活動이 必要하다고 力說하였다.

1924年에 이르러 NFPA를 任意 團體로부터 正式 法人體로 만들어 이를 發展시키자는 움직임이 胎動, 우선 이에 所要되는 資金 12,000弗의 草金 「캠페인」이 始作되었다.

이리 하여當時 NFPA의 幹部였던 「앨버트 티 렐」氏는 4,000餘名의 會員들에게 草金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이에 協調해 주기를 呼訴하는 書翰을 發送하였던 것이다. (그當時에는 이미 火災保險會社 외에도 一般 消防關係 人事等 多數가 會員으로 加入하고 있었다.)

그結果 이 해 5月에 開催된 年例會議에서 60餘名의 會員이 이 呼訴에 呼應, 4,000弗의 寄附를 約束하였다.

그러나 4,000弗로서는 아직 不足한 形便이므로 NFPA 幹部들은 繼續 自體基金 確立의 必要性을 力說하였다. 이 呼訴를 둘러싸고 主要 火災保險會社들의 意見이 둘로 나뉘었다. 即 한편에서는 NFPA를 當時의 運營方案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NFPA를 좀더 効果의 研究·啓蒙機關으로 發展시키자는 것이었다. 한 예로 「하트포드」 保險會社의 「에프 시 뮤어」氏는, 草金運動은 NFPA의 性格을 變更시켜 또

하나의 全美保險業者協會(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 또는 料率算定協會를 만드는 것이나, 다음이 없으므로 募金運動에 反對한다는 意見을 披瀝하였다.

이에 反하여 「뉴 잉글랜드」保險會社의 「시 앤 고다드」社長과 全美保險業者協會의 「이라 울슨」教授等은 募金運動에 強力한 支持를 보냈다. 특히 「고다드」氏는 NFPA가 募金運動을 벌여 自體資金을 造成, 그 資金으로 여러 가지 事業을 하여 利益을 얻어들인다고 해도 이 利益金이 모두 火災豫防 研究·啓蒙 등에 使用될 것이므로 結局은 商業的인 營利를 追求하지 않는 結果를 낼 뿐만 아니라 保險會社나 國家에게 다 利益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리 하여 같은 해 7月 1日까지는 95名의 會員이 實際로 6,000弗의 募金을 하기에 이르렀다.

NFPA 幹部들은 이 때부터 大都市들을 찾아나며 講演會, 安全點檢等의 實施로 一般의 關心을 사기 시작했다. 한 가지 例로 어떤 都市에서는 公立學校 10個所를 點檢한 結果 그 중 6個學校의 消火器가 使用不能이었으며 한 school에서 는 전혀 充藥이 되어 있지 않은 등... 이러한 點檢結果는 一般에게 커다란 關心 거리가 되었고 여러 都市의 市議會等에서 큰 「이슈」로 登場하였다.

NFPA 幹部들의 獻身의인 努力과 國民의 성원으로 NFPA는 그 規模가 擴大되어 1930年에 正式으로 法人體로 登錄하기에 이르렀다.

NFPA의 活動狀況에 대하여는 이미 本誌 创刊號에 紹介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說明을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設立當時에는 保險會社들이 共同出捐 運營하였으나 오늘날에는 火災保險會社들이 構成會員으로 있을 뿐이라는 事實을 말해 두고 싶다. 即 NFPA가 점차로 自立을 하게 됨에 따라 保險會社의 出捐金이 減少되어 오늘날에는 保險會社에서 나오는 돈이 年間收入金의 1% 程度, 書籍等의 販賣代金과 會員의 會費가 80% 정도, 工場等의 寄附金 및 其他가 그 나머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勿論 이 比率은 해마다 약간씩의 差異가 있다. 1971年の 例를 들면, 그 總收入이 4,400,000弗, 支出이 3,860,000弗, 利益金이 540,000弗이었으며 收入金의 構成比를 살펴보면 非定期刊行物 및 「필름」·「슬라이드」等의 販賣利益金이 62.3%, 定期刊行物 販賣收入金이 8.1%, 會員들의 會費 및 年例會議 參席時의 募金이 18.5%, 寄附金이 6.9%, 其他가 「로열티」, 特殊事業(special projects) 및 사업 청부, 投資等이었다. (特殊事業 및 事業請負란 政府, 州 또는 어떠한 機關으로부터 火災豫防 및 鎮壓에 關係되는 特殊研究課題를 請負 받아서 그 研究·調查事業을 實施, 그에 대한 代價를 받는 것을 意味한다.)

刊行物 販賣收益金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 것은 “電氣에 관한 規定”(National Electrical Code)으로서 31.5%, NFPA의 各種 「스탠더드」가 17.3%, 教育(啓蒙) 및 「캠파인」用 刊行物이 14.3%, 一般書籍이 7.2%, “防火「핸드북」”이 6.4%, 其他 視覺媒介物 5.9%, 나머지가 17.4%였다.

또한 1971年 12月 31日 現在의 資產은 1,920,000弗, 負債는 747,000弗이었다.

그리고 1972年的 例를 들면 收入이 4,724,924弗, 支出이 4,403,280弗, 收益이 321,644弗이었는데, 收入內容을 보면 會費 788,243弗(16.7%), 書籍·「필름」등의 販賣代 2,860,120弗(60.5%), 定期刊行物 販賣代 446,664弗(9.5%), 契約(請負 맡은) 研究로 얻은 收益金 224,575弗(4.8%), 寄附金 273,823弗(5.8%), 年例會議等의 會議時의 收益金 91,640弗(1.9%), 其他 39,859弗(0.8%)이었다.

III. 防火協會의 存在意義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部分의 防火協會는 保險會社들이 中心이 되어 組織·運營하고 있는 바, 그러면 保險會社들이 왜 이처럼 莫大한 費用을 들여 가면서 이러한 防災活動을 하고 있는가.....이에 관해 살펴보는 것도 無益한 일은 아닐 것 같다.

× 39
 198
 66
 958
 858
 1916

첫째는 火災로 인한 國民財產의 損失을 防止 함으로써 國家의 利益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保險側面에서는 保險者와 被保險者の 부담 경감을追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文化가 發達되고 生活이 점차 복잡화함에 따라 火災發生의 頻度도 자연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한被害가 점차 增加하는 추세임은 누구나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一例로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 每秒當 1件 정도의 火災가 發生한다고 推定되고 있다. NFPA는 1971年 한 해 동안 美國에서 發生한 住宅火災가 (산림 화재 등 제외) 約 1백만 件이라고 推算했는데 이 것은 30秒當 1件이라는 놀라운 記錄이다.

英國의 경우에는 每日 消防署에 申告되는 住宅火災件數는 약 300件, 다시 말해서 1時間當 13件의 住宅火災가 發生한다는 統計이다.

韓國의 例를 들면 1963년의 火災發生件數는 1,904件에 死亡者 103名, 負傷者 200名, 被害額 321,078,000원이었던 것이 1968년에는 3,909件發生에 死亡者 198名, 負傷者 576名, 被害額 1,512,538,000원, 다시 1973年에는 4,159件發生에 245名 死亡, 813名 負傷, 1,538,731,000원의 被害額을 記錄하였다.

이렇듯 火災의 發生은 增加一路에 있으나 일단 發生한 火災를 적은 費用으로 그리고 効果의 으로 鎮壓할 수 있는 劃期的인 方法은 아직 發見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美國「닉슨」大統領의 特命에 依據,組織되어 2年間에 걸쳐 火災에 대한 調査·研究活動을 完了한 “全美 火災豫防 및 消火에 관한 特別委”(The National Commission on Fire Prevention and Control)가 1973年에 提出한 最終 報告書에는 “火災豫防을 위해서 좀더 많은 時間과 物資를 投入하는 길만이 人命과 財產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法”라고 斷定하였다..

이 報告書는 이를 위해서 (ㄱ) 消防署가 火災의 鎮壓을 하는 機關이라는 認識을 버리고 火災鎮壓과 豫防에 똑같은 比重을 두어 이 두 가지

業務를 同時에 遂行하도록 할 것, (ㄴ) 政府와 州當局이 좀더 體系의이고 組織的인 行政力を 動員할 것, (ㄷ) 汎國民의인 教育(啓蒙) 活動을 強化할 것, (ㄹ) 點檢을 強化하고 保險會社 등 民間團體가 防火事業을 좀더 活潑히 하도록 努力할 것 등을 提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防火問題는 “官”的 힘만 가지고는 効果를 볼 수 없으며 “民”이 積極的으로 協調해야 그 實을 거둘 수 있는 바 “民” 중에서도 利害當事者인 保險會社의 활발한 參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參考로 美國의 一部地方에서는 安全點檢을 強化한 결과 火災發生件數가 15~20% 정도 감소되었다는 事實을 附言해 두고 싶다. 이런 意味에서 他國에 比해 뒤늦거나마 韓國火災保險協會가 設立되었을 間接 協會가 大部分의 他國의 防火協會와 같이 弘報事業만을 遂行하는 것이 아니라 法的인 跫報침을 가지고 點檢業務까지도 擔當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火災로 인한 被害의 減少에 있어 좋은 展望을 보여 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社會倫理의 發達이라는 側面에서 防火協會가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和蘭에서 韓國 留學生 한 명이 體驗한 이야기를 例로 드는 것이 좋겠다. 어느 날 이 留學生이 大學「캠퍼스」에서 잘 아는 教授 한 분을 만나 와 自家用車를 타고 出勤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理由를 물은즉, “公害問題가 심각하게 論議되고 있는 요즈음 나 한 명이 出勤하자고 自家用車를 타서야 되겠는가? 나는 우리 집안 食口 모두에게 골고루 用務가 있어 모두 함께 타기 전에는 自家用車를 좀체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教授의 대답이었다고 한다.勿論 이 것은 石油波動이 있기 전의 이야기이니, 西歐의 社會倫理가 어느 만큼 發達되어 있는가 하는 事實이 嚙々히 짐작이 된다. 이렇게 社會倫理가 發達된 國家의 保險會社들이 利益金의 一部를 社會에 還元, 國家와 社會의 福利를 위하여 使用하여야 해야 한다는 一種의 使命感 같은 것을 가진 것은 當然한 일이 라고 하겠다. [끝]